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1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구자근 · 인요한 · 김위상
김선교 · 강승규 · 강대식
박준태 · 이만희 · 정동만
최은석 · 박성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바이오매스 또는 석유계 물질로 제조하며, 일정한 분해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으로 최종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이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연구·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분해 조건”이란 온도, 습도, 분해 기간 등 환경 상태를 고려한 퇴비화 조건, 자연토양 조건, 해양조건 등을 말한다.
4. “퇴비화”란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시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혐기성·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시켜 퇴비를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활동

6.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7. “유기성 폐자원”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제1항제3호의 분해조건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발전 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
항
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 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 및 촉진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통계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자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장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 후 유실 또는 통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2. 음식물 등과 혼합되거나 분리하기 어려워 재사용·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 및 포장재

제11조(생분해성 플라스틱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2조(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표지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생분

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품질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품질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

로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제14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칙)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